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2024. 12.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12. 13. 김영호의원 · 강경숙의원 ·
최보운의원 등 164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12월 1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4.12.18.)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2019년 9
2,958명에서 2024년 115,610명으로 24.3% 증가했다. 그러나 성적 위주
의 교육 방식은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해, 많은 특수교
육대상 학생들이 일반 학급에서 소외되거나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

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경쟁 사회가 심화 될수록 성장기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 학교는 올바른 가치관과 균형 잡힌 대인관계를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이어야 한다. 통합교육은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성장하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통합교육은 미래지향적인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이다.

통합교육은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는 학생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한다. 통합된 교육환경은 장애 학생에게는 더 나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비장애 학생에게는 다양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학생이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미래 사회에서 더 나은 협력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보다 포용적인 사회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전체적인 사회 통합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차별과 배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이다. 통합교육은 그 해결의 시작이 될 것이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일반 학급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면, 이들은 학습의 기회를 얻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형성에서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학습하며 상호작용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사회적 기술 습득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통합교육은 점진적인 교육환경 개선도 가능하게 한다. 장애 학생이 학교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시설을 개선하면, 이들

의 학습 동기와 성취도는 더욱 향상될 것이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학생을 위한 경사로나 엘리베이터, 장애 학생을 위한 화장실 등 기본적인 시설이 확충되면, 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교육 구성원 모두를 위한 생활과 학습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이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UN 장애인권리위원회도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장애 아동이 분리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에 “(a) 당사국은 의료적 손상을 기반으로 한 접근으로 특수교육을 유지하고 있고, 특수학교의 수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어 분리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자폐성 장애아동, 심리사회적 장애아동 또는 중복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아동의 수가 많음”, “(b) 점자, 수어 및 접근 가능한 교수법으로 훈련된 교사와 지원인력의 수가 부족하고 통합교육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기술 및 역량에 대한 교사 훈련 수준이 불충분함”, “(c)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동은 교육부 지원을 받지 못함”. 등을 지적했다.

통합교육은 단순히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통합을 넘어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한다. 통합교육을 통해 교육 구성원들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갈등을 줄이며 협력하는 방안을 찾아갈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사회 통

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통합교육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을 결의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강대훈)

1. 제안 취지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의미함¹⁾.

최근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학생의 수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2015년 6,806,411명이던 유·초·중등학교 전체 학생 수는 2024년 5,671,098명으로 1,135,313명(16.7%) 감소하였는데, 이에 비해 특수교육 대상자는 2015년 8만 8,067명에서 2024년 11만 5,610명으로 같은 기간 동안 27,543명(31.3%)이 증가하였음.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 특수교육대상자 수 및 배치 현황 >

연도	2015	2016	2020	2021	2022	2023	2024
특수교육대상자 수 (명)	88,067	87,950	95,420	98,154	103,695	109,703	115,610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 지원센터	26,094 (29.6%)	25,961 (29.5%)	26,615 (27.9%)	27,288 (27.8%)	28,233 (27.2%)	29,236 (26.7%)	30,390 (26.3%)
일반학교	61,973 (70.4%)	71,989 (70.5%)	68,805 (72.1%)	70,866 (72.2%)	75,462 (72.8%)	80,467 (73.3%)	85,220 (73.7%)

자료: 교육부 제출 자료, 특수교육통계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한편, 최근 특수교육대상자 중 일반학교에 배치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수는 2024년 8만 5,220명으로 2015년 대비 23,247명이 증가하였고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중 일반학교 배치 학생의 비율은 2015년 70.4%에서 2024년 73.7%로 3.4%p 증가함.

구체적으로 2024년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8만 5,220명 중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은 6만 5,966명이며, 일반학급으로 배치된 학생은 1만 9,254명임.

< 특수교육대상자 수 및 배치 현황 >

(단위: 명)

구분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교육 지원센터	계
		특수학급	일반학급		
학생 수	장애영아	107	-	363	470
	유치원	905	5,803	-	8,746
	초등학교	10,316	35,042	-	54,283
	중학교	6,904	13,778	-	25,013
	고등학교	6,895	11,185	-	22,040
	전공과	4,900	158	-	5,058
	계	30,027	65,966	363	115,610

자료: 교육부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교육부 역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통합교육의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여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23~2027)」을 발표하면서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주요 추진 과제로 설정하였고, 2023·2024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통해 통합교육 지원체계 개편과 교원 등의 통합교육 역량강화,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등의 의지를 표명한 바 있음.

아울러, 제21대 국회에서도 통합교육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를 전문개정²⁾하여 개정조항은 2025년 2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

현행	시행예정
제21조(통합교육)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7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지원인력의 배치,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일반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법률 제20351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통합교육)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의안번호 제2126441호)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교의 장은 일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교원의 협력을 통하여 차별의 예방, 교육과정의 조정, 제28조에 따른 지원인력의 배치,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의 지원 및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일반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교육교원을 둘 수 있다.
---	---

그러나, 2024년 11월 법령상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과중한 업무로 특수교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통합교육을 위한 여건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 결의안은 주문에서 밝힌 것과 같이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 개선을 도모하여 모든 학교 구성원이 차별 없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교사와 학생이 함께 안정적으로 교육과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려는 취지로 발의된 것임.

2. 주요 검토의견

가. 통합 교육환경 조성 촉구(안 주문 제1호)

결의안 주문 제 1호는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차별 없이 함께 교육받으며, 존중과 협력을 배울 수 있는 통합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촉구하고 있음.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함)」에 따르면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가족지원), 제24조(치료지원), 제26조(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지원), 제27조(통학 지원) 등의 규정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아울러, 시행예정인 「특수교육법」 제21조는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제1항),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에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제2항),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이 차별의 예방, 교육과정의 조정, 지원인력의 배치,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 통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바(제3항),

통합교육을 위한 물리적 학습 환경 조성의 근거는 일정 수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동 결의안 주문에서 밝힌 것과 같이 특수교육대상자가 차별 없이 존중과 협력을 배울 수 있는 통합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물리적 지원과 더불어 장애 인식·공감 문화가 정착하고 장애학생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질적인 측면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임.

나. 안정적인 교육 기반과 필요한 자원 확충 촉구(안 주문 제4호)

결의안 주문 제4호는 교사가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교육 기반과 필요한 자원을 확충하도록 촉구하고 있음.

「특수교육법」 제27조제3항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³⁾에 따를 때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각 지역의 여건이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치기준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법령상 특수교육교원은 학생 2명 ~ 6명당 1명이 배치되어야 함.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치하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한다. 다만,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현황,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및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별 교사는 교육부장관이, 단위 학교·학급별 교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치기준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다.

그러나, 2024년 기준 특수교육교원 1인당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4.27명으로 조사되어 원칙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인 4명을 초과하는 등 현실적 제약으로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특수교육대상자, 교원 현황 >

연도	2015	2016	2020	2021	2022	2023	2024
특수교육대상자 수(명)	88,067	87,950	95,420	98,154	103,695	109,703	115,610
특수교육교원 수(명)	18,339	18,772	22,145	23,494	24,962	25,599	27,084
교원 1인당 학생 수	4.80	4.69	4.31	4.18	4.15	4.29	4.27

자료: 교육부 제출 자료, 특수교육통계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또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3항⁴⁾ 및 법 시행령 제25조⁵⁾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이 제공되고 있으나, 2023년 기준 배치된 특수교육지원인력 1만 4,058명 중 약 34%에 달하는 4,778명이 사회복지요원에 해당하여 지원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③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5조(지원인력) ① 교육감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지원인력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인력의 채용·배치 등 지원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지원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특수교육에 관한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③ 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동 결의안은 이와 같이 특수교육을 위한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여건 속에서 교사가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춘 교육을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통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교육 기반과 필요한 자원의 확충을 촉구하려는 취지로 보임.

참고로, 유사한 취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교원의 정신 건강 증진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통합교육 여건 조성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⁶⁾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임.

다.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정책 개선, 예산 지원, 비장애인 인식 개선 등 총체적인 노력 촉구(안 주문 제6호)

결의안 주문 제6호는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정책 개선, 예산 지원, 비장애인 인식 개선 등 총체적인 노력에 동참하도록 촉구하고 있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통합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제21대 국회가 「특수교육법」 제21조를 전문개정하였고⁷⁾, 교육부 역시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23~2027)」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하여 2023·2024년도 특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4826호)

7) 검토의견 p.8. 참고

수교육 운영계획을 통해 특수교육 지원 강화 정책을 구체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한편, 예산 지원 측면에서 여전히 통합교육 지원을 강화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교육부 예산안 분석보고서⁸⁾에 따르면 학력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특수교육 지원 예산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학생 1인당 교육 예산과 학생 1인당 특수교육 예산 >

(단위: 억원, 만명, 만원, %, 배)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교육청 총 교육예산	596,920	619,642	682,647	737,370	820,810	773,326	849,199	1,072,473	950,084	5.3
전체학생수	620	602	583	570	556	544	535	532	526	△1.8
학생1인당 교육예산(A)	963	1,029	1,171	1,294	1,476	1,422	1,587	2,016	1,806	7.2
교육청 특수교육예산	21,795	23,236	26,048	27,205	29,295	30,725	31,221	32,372	36,197	5.8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	8.8	8.7	8.9	9.0	9.2	9.5	9.8	10.3	10.9	2.5
학생 1인당 특수교육예산 (B)	2,475	2,642	2,915	2,997	3,151	3,220	3,181	3,122	3,300	3.2
B/A	2.6	2.6	2.5	2.3	2.1	2.3	2.0	1.5	1.8	-

자료: 국회 예산정책처,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p.22.

8) 국회 예산정책처,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p.22.

위 표에 따르면 교육청 특수교육예산과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예산은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학생 1인당 교육청 총 교육예산의 비율과 비교하면 2015년 2.6배에서 2019년 2.1배, 2023년 1.8배로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이에 국회 예산정책처는 특수교육 부문에 대한 과소한 재정지원 우려를 제기한 바 있음.

정부와 국회는 동 결의안의 취지와 같이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법·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지원이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여야 할 것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심사결과

원안가결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

주 문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은 입시 중심의 환경으로 인해 심각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성적만을 목표로 하는 줄세우기식 교육은 학생들이 다양하게 학습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학교가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기회를 상실케 한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한편,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경쟁 위주의 입시 교육으로 인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학습 받을 권리는 오히려 침해받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의 특수교육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현실이다. 주로 물리적 환경에 대한 논의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 변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통합교육 환경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많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일반 학급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통합교육의 기회를 잃고 있으며, 특수교사들은 과중한 업무와 극한의 교육환경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분한 지원 없이 학생 개개인의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은 교육의 질적 저하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모든 학교 구성원이 차별 없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교사와 학생이 함께 안정적으로 교육과 학습에 전

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에 공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차별 없이 함께 교육받으며, 존중과 협력을 배울 수 있는 통합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2.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고, 각자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맞춤형 수업을 지원한다.
3. 모든 학생의 자질과 특성을 존중하며, 다름과 차이를 편견 없이 수용하고, 상호 배려할 수 있는 통합형 교육을 지향한다.
4. 교사가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교육 기반과 필요한 자원을 확충한다.
5.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물고, 장애인 학생이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6.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정책 개선, 예산 지원, 비장애인 인식 개선 등 총체적인 노력에 동참한다.
7. 정부는 생애주기별 통합교육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 실행방안과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2019년 92,958명에서 2024년 115,610명으로 24.3% 증가했다. 그러나 성적 위주의 교육 방식은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해, 많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일반 학급에서 소외되거나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경쟁 사회가 심화 될수록 성장기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 학교는 올바른 가치관과 균형 잡힌 대인관계를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이어야 한다. 통합교육은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성장하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통합교육은 미래지향적인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이다.

통합교육은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는 학생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한다. 통합된 교육환경은 장애 학생에게는 더 나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비장애 학생에게는 다양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학생이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미래 사회에서 더 나은 협력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보다 포용적인 사회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전체적인 사회 통합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차별과 배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이다. 통합교육은 그 해결의 시작이 될 것이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일반 학급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면, 이들은 학습의 기회를 얻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형성에서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학습하며 상호작용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사회적 기술 습득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통합교육은 점진적인 교육환경 개선도 가능하게 한다. 장애 학생이 학교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시설을 개선하면, 이들의 학습 동기와 성취도는 더욱 향상될 것이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학생을 위한 경사로나 엘리베이터, 장애 학생을 위한 화장실 등 기본적인 시설이 확충되면, 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교육 구성원 모두를 위한 생활과 학습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이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UN 장애인권리위원회도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장애 아동이 분리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에 “(a) 당사국은 의료적 손상을 기반으로 한 접근으로 특수교육을 유지하고 있고, 특수학교의 수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어 분리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자폐성 장애아동, 심리사회적 장애아동 또는 중복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아동의 수가 많음”, “(b) 점자, 수어 및 접근 가능한 교

수법으로 훈련된 교사와 지원인력의 수가 부족하고 통합교육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기술 및 역량에 대한 교사 훈련 수준이 불충분함”, “(c)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동은 교육부 지원을 받지 못함”. 등을 지적했다.

통합교육은 단순히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통합을 넘어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통합교육을 통해 교육 구성원들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갈등을 줄이며 협력하는 방안을 찾아갈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통합교육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을 결의한다.